



2019. 4. 22. ~ 4. 26.

상하수도사업소

2019. 행정(지도)감사 결과

【 상하수도사업소 】

청렴  세상

기획감사실

- 목 차 -

I. 감사개요 및 결과

II.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III. 주요지적사항

IV. 감사 처분요구서

I. 감사개요 및 결과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 감사구분 : 행정(지도)감사
- 감사기간 : 2019. 4. 22. ~ 4. 26.(5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16. 5. ~ 2019. 3.
- 감사대상 : 행정업무전반
 - 군정 주요시책, 민원, 농지, 공사추진 실태
 - 예산·회계, 세입·세출, 물품, 서무, 보안 등 업무처리 실태

감사결과

□ 총지적건수 : 22건

※ 운영팀 7, 상수도팀 6, 정수관리팀 3, 하수도팀 6

○ 행정상 조치 : 22건 (시정 11,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6건 10,921,300원

- 회 수 : 4건 695,000원
- 감 액 : 1건 10,220,000원
- 추 징 : 1건 6,300원

II. 처분계획

행정상 조치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	운영팀	주의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 소홀
2		시정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3		시정 추징 6,3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관리 소홀
4		주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5		주의	회계관직공무원 부재중 직무대리 지정 소홀
6		주의	세출예산집행과목 준수 소홀
7		시정	물품관리 소홀
8	상수도팀	주의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발주 소홀
9		시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10		주의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가뭄(식수) 극복 대책사업 외 1건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11		시정 회수 454천원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소홀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2	상수도팀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13		시정 감액 10,220천원	증약~추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 설계 부적정
14	정수관리팀	시정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정 회수 136천원	옥천정수장 병입수 보관창고 증축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6		시정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17	하수도팀	주의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 소홀
18		시정 회수 51천원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9		주의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20		시정 회수 54천원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 산업안전관리 정산소홀
21		주의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22		주의	민원문서 보완요구 절차 부적정

재정상 조치

구 분	제 목	금 액 (원)	비고
계	6건	10,921,300	
회수	소 계 (4건)	695,000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소홀	454,000	
	옥천정수장 병입수 보관창고 증축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36,000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51,000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 산업안전관리 정산소홀	54,000	
감액	소 계 (1건)	10,220,000	
	증약~추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 설계 부적정	10,220,000	
추징	소 계 (1건)	6,3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관리 소홀	6,300	

Ⅲ. 주요지적사항

(1)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 소홀

-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조 및 옥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에 따라 수도사업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수를 취수하여 일련의 정수과정을 거쳐 각 가정과 사업장 등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로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2017, 2018년도 예산편성시 신규급수가구 증가 등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사용료 수익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도 세입부분의 증가분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2)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 수도사용요금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정한 수도요금 유효표에 따라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징수하며,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하되,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여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함.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따르면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73조(강제징수)에 따르면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1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및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유무를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에 대하여 독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관리 소홀

-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및 24조(수도사용요금)에 따르면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은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와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36조 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월 수도 요금의 5톤(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자의 경우 주민복지과로 매월 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아 해지 조치하여야 함에도,
- 2016. 5.부터 2019. 3.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명단 확인결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연순은 2019.1.16.일 전출함으로써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감면대상에 해지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300원을 감면해주었음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며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소속 상근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식사 제공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5) 회계관직공무원 부재중 직무대리 지정 소홀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4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지정대리)에 의하면 규정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토록 하고 있고,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고,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회계관직을 갖고 있는 ** 및 **팀장이 교육, 연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후 예산을 집행(자금승인 및 지급명령)하여야 함에도, 재무관, 지출원 및 수입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없이 예산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세출예산집행과목 준수 소홀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정수책정 대상물품과 사무관리비에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소모성 물품구입은 일반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고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비정수 물품인 '책상(내구연한 8년)'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예산 집행과목 준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물품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 동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계획 알림 [재무과-23689호(2018.07.23.)]으로 실과소·읍면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재물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접이식의자 외 4종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등록 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는 내구연한을 '0년'으로 입력하여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발주 소홀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규칙 제7조에는 위탁관리비는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설계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를 위해 2018.11.27.자로 자체설계에 의거 대상시설 125개소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 이를 근거로 2018.12.17.일자로 입찰공고하여 2019.1.3.자로 낙찰자 결정 후 사업대상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용역비 산정은 대상시설 125개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3개소가 폐지되어 용역계약 당시 122개소로 축소되는 등 용역개시 전 사업량 감소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사전에 용역비 산출내역 조정 검토 없이 입찰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를 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상복구비 등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따르면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유무를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체납자 ****(주) 외 1명에 대하여 독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가뭄(식수) 극복대책사업 외 1건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별표9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에는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가뭄(식수) 극복대책사업 외 1건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1)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회보험료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총 45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1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덕의봉 약수터)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 근거가 명시된 원가계산서(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작성 없이 수의계약 당사자의 1개업체 견적서만을 적용하여 상기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13) 증약~주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증약 ~ 주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을 2019.4.2.에 (주)**** 와 도급 계약하고, 2019.4.5.에 착수하여 2019.11.30.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설계에 계상된 백색차선도색량이 중복(1,144㎡) 되었고, 사업물량 중복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0,22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설물의 종류를 정의 하면서 별표1에서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는 제2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제6조에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시설물관리계획에는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안전건설과 - 2952(2019.1.28.) 시설물안전법(시특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특법에 의한 대상 시설인 지방상수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안남상수도는 2015.6.11. 준공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는데도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로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5)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 외 1건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는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비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총 18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16)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 「수도법」 제30조제1항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등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령」 제49조2에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검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를 2017년 ~ 2018년에 미개최하였으며,
- 위원들의 임기가 2018.07.14.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2019.04)까지 위원들을 미위촉하는 등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함

(17)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 소홀

-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조 및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업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2015.3.5.자 조례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사용료수익 증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 2016, 2018년 예산편성 시 세입부분의 증가분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18)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원하수처리장 하수관보호공 및 후문설치공사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9)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제7조(사용기준)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목적외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규정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따라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사용내역서를 징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총 5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2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이다.
가목.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목.**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목.**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이며,
- 제5조(심사요청)규정에 의하면 발주부서의 장은 자체사업의 경우 추정금액이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1억원), 용역 5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옥천군 계약심사부서에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를 득하고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1) 민원문서 보완요구 절차 부적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한다”와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충북 옥천군 이원면 *** **_** ***이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을 처리하면서 신청서류 검토결과 나타난 보완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을 1차보완 요청하였으나 민원인이 보완하지 않아 2차 보완요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청하여야 하나, 1차보완 처리일(2018.7.18.)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2차 보완을 요구하는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완 절차,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민원 처리한 사실이 있음

IV. 감사 처분요구서

【 No 1 】

감사자 조도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 소홀

[현 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2018	사용료수익	4,302,575,000	4,681,204,620	△378,629,620	
2017	사용료수익	4,276,519,000	4,500,452,460	△223,933,46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조 및 옥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에 따라 수도사업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수를 취수하여 일련의 정수과정을 거쳐 각 가정과 사업장 등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로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2017,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신규급수가구 증가 등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사용료 수익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도 세입부분의 증가분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현 황]

(단위 : 원)

연번	납세자명	주 소	최초납기	체납내역		체납자 재산 (압류할 물건)	비고
				건수	금액		
계	1 명			4	1,372,980		
1	***	**면 *** **	2018.12.31	4	1,372,980	*****	

【위법부당내용】

- 수도사용요금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정한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라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징수하며,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하되,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여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함.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따르면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73조(강제징수)에 따르면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및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유무를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에 대하여 독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면 *** ** ***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6,300원

[제 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관리 소홀

[현 황]

(단위 : 원)

납기	성명	주 소	총액	상수도	하수도	감면액	자격상실일
계						-6,300	
20**-**	***	**면	3,400	1,860	1,540	-3,150	2019.1.16
20**-**	**	**면	5,100	3,120	1,980	-3,150	2019.1.16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및 24조(수도사용요금)에 따르면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은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와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36조 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월 수도 요금의 5톤(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자의 경우 주민복지과로 매월 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아 해지 조치하여야 함에도,
- 2016. 5.부터 2019. 3.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명단 확인결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은 2019.1.16.일 전출함으로써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감면대상에 해지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300원을 감면해주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면 ***에 대하여 6,300원 추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현 황]

(단위 : 원)

내역	세목	지출일	지출금액	비고
직원 사기진작 급식제공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18.12.14.	159,0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며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소속 상근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식사 제공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직공무원 부재중 직무대리 지정 소홀

[현 황]

직급	성명	구분	기간	일수	대리지정 여부	건수 / 금액		비고	
		계					183건	811,129천원	
재무관	***	교육	18.02.22.	1	부	11건	4,028천원		
		연가	18.04.05.	1	부	19건	28,628천원		
		연가	18.10.31.	1	부	16건	8,737천원		
지출원 수입원	***	대체휴무	18.01.16.	1	부	8건	16,853천원		
		연가	18.04.02.	1	부	12건	11,955천원		
		교육	18.05.02. ~05.04.	3	부	49건	193,001천원		
		연가	18.06.05.	1	부	13건	128,255천원		
	***	연가	18.07.27.	1	부	14건	95,007천원		
		대체휴무	18.09.19	1	부	8건	92,195천원		
		대체휴무	18.10.24.	1	부	14건	115,610천원		
		연가	18.11.02.	1	부	19건	116,860천원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4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지정대리)에 의하면 규정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토록 하고 있고,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고,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회계관직을 갖고 있는 ** 및 **팀장이 교육, 연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후 예산을 집행(자금승인 및 지급명령)하여야 함에도, 재무관, 지출원 및 수입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없이 예산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출예산집행과목 준수 소홀

[현 황]

(단위 : 원)

적 요	지출일자	금액	부적정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비고
업무용 책상 및 책꽂이 구입	17.07.21.	495,000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385,0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정수책정 대상물품과 사무관리비에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소모성 물품구입은 일반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고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비정수 물품인 '책상(내구연한 8년)'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예산 집행과목 준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물품관리 소홀

[현 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취득일자	취득 수량	취득액	부적정 내구연한	적정 내구연한
	계		21	17,615,310		
1	접이식의자	2016.05.16.	8	948,000	0년	8년
2	패널시스템용칸막이	2016.06.15.	2	306,000	0년	7년
3	무선주파수식별장치	2017.03.15.	1	2,160,000	0년	6년
4	검침용 PDA	2017.06.30.	8	13,770,000	0년	6년
		2017.09.12.	1			
5	건습식진공청소기	2018.01.16.	1	431,310	0년	7년

※ 내구연한: 조달청고시 제2018-14호(2018.10.05.시행) 참고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 동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계획 알림 [재무과-23689호(2018.07.23.)]으로 실과소·읍면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재물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접이식의자 외 4종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등록 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는 내구연한을 '0년'으로 입력하여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물품의 내구연한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발주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위탁관리비 산정		입찰공고		용역계약	
	시설수	금액	시설수	금액	시설수	금액
2019	125	109,630	125	109,630	122	109,630

< 시설폐지 경과 >

- 2018.12.26. : 안내 진모레
- 2018.12.31. : 안남 상서당, 하서당
- 2019. 1. 8. : 동이 현동

< 입찰추진 경과 >

- 2018.11.27. : 용역비 산정
- 2018.12.17. : 입찰공고
- 2019. 1. 3. : 용역계약(주식회사 *****)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규칙 제7조에는 위탁관리비는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설계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를 위해 2018.11.27.자로 자체설계에 의거 대상시설 125개소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 이를 근거로 2018.12.17.일자로 입찰공고하여 2019.1.3.자로 낙찰자 결정 후 사업대상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용역비 산정은 대상시설 125개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3개소가 폐지되어 용역계약 당시 122개소로 축소되는 등 용역개시 전 사업량 감소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사전에 용역비 산출내역 조정 검토 없이 입찰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현 황]

(단위 : 원)

연번	납세자명	주 소	최초납기	체납내역		체납자 재산 (압류할 물건)	비고
				건수	금액		
계	2 명			3	1,070,540		
1	****	**시		2	365,270	*****	
2	*** (****)	**읍		1	705,270	*****	

【위법부당내용】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를 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상복구비 등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따르면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도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유무를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체납자 ****(주) 외 1명에 대하여 독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 **** 외 1명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재산 압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가뭄(식수) 극복대책사업 외 1건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대상공사 구분	총사업비	품질관리계획 수립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여부	비고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가뭄(식수) 극복대책사업	초급 품질관리 대상	421,250	부	부	전문
군북 소정~안내 장계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초급 품질관리 대상	481,080	부	부	전문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 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별표9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에는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안내면 용촌리 솔미기 가뭄(식수) 극복대책사업 외 1건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54천원

[제 목]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	19,361	2018.2.9	2018.2.12	2019.1.18	***** ***	사회보험료 미정산 454천원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회보험료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총 45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지하수개발공사 건에 대하여 454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먹는물 공동시설 (덕의봉 약수터) 보수공사	10,620	2018.10.23	2018.10.26	2018.11.27	****(주)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덕의봉 약수터)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 근거가 명시된 원가계산서(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작성 없이 수의계약 당사자의 1개 업체 견적서만을 적용하여 상기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0,220천원

[제 목] 증약~추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현 황]

- 위 치 : 옥천군 군북면 일원
- 사 업 비 : 1,131,792천원(도급 569,492천원, 관급 562,300천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8.12km D15~150mm
- 계 약 일 : 2019. 4. 2.
- 사업기간 : 2019. 4. 5. ~ 2019. 11. 30.
- 도 급 사 : (주)**** ***
- 현 공 정 : 2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증약~추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을 2019.4.2.에 (주)**** 와 도급 계약하고, 2019.4.5.에 착수하여 2019.11.30.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설계에 계상된 백색차선도색량이 중복(1,144㎡) 되었고, 사업물량 중복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0,22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약~추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10,220천원 감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시설물명	관리주체	종류	종별	주소	등급	준공일	비고
옥천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2종	이원면 용병2길 43-54	B	1992.5.24	
청산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2종	청산면 관기로 45	B	1982.1.1	
안남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2종	안남면 화학리 498-6		2015.6.11	누락

【위법부당내용】

-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설물의 종류를 정의 하면서 별표1에서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는 제2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제6조에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시설물관리계획에는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전건설과 - 2952호(2019. 1. 28.) 시설물안전법(시특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특법에 의한 대상 시설인 지방상수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안남상수도는 2015.6.11. 준공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는데도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로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남상수도를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로 등록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6천원

[제 목] 옥천정수장 병입수 보관창고 증축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정수장 병입수 보관창고 증축공사	28,458	2018.3.16	2018.3.22	2018.4.18	****(주) ***	환경보전비 미정산 136천원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는 옥천정수장 병입수 보관창고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보전비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13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옥천정수장 병입수 보관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136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현 황]

일 시	운영현황	위원회 개최
16.05.23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기간: 2016. 05. 30. ~ 06. 08.]	개최일시: 16. 06. 10.(금)
16.06.09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보고	
16.06.15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7년도	내역없음	17년도 개최내역 없음
18.07.14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종료	18년도 개최내역 없음
18.11.01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계획보고	
18.11.04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기간: 2018. 11. 07. ~ 11. 16.]	

【위법부당내용】

- 「수도법」 제30조제1항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등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령」 제49조2에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검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017년 ~ 2018년에 미개최하였으며,
 - 위원들의 임기가 2018.07.14.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2019.04)까지 위원들을 미위촉하는 등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함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용) 소홀

[현 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2018	사용료수익	1,408,437,000	1,544,399,890	△135,962,880	
2016	사용료수익	796,553,000	884,906,520	△88,353,52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조 및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업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여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주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2015.3.5.자 조례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사용료수익 증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 2016, 2018년 예산편성 시 세입부분의 증가분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1천원

[제 목]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	19,711	2017.10.24	2017.10.26	2017.11.14	(주)**** ****	환경보전비 미정산 51천원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는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보전비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5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옥천하수처리장 외벽 도장공사에 대하여 51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이원하수처리장 하수관보호공 및 후문설치공사	12,815	2017.5.2	2017.5.8	2017.6.6	****(주)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원하수처리장 하수관보호공 및 후문설치공사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4천원

[제 목]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군 하수관로 (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	214,2850	2017.6.29	2017.7.4	2017.10.31	(주)**** ***	

【위법부당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제7조(사용기준)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목적외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규정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따라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사용내역서를 징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처리를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총 5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옥천군 하수관로(옥천읍 문정리) 확장사업에 대하여 54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현 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심사 요청기관	계약심사 기준액	계약심사 여부	비고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5,008	2017.2.27	옥천군	50,000	부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2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이다.
가목.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목.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목.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이며,

- 제5조(심사요청)규정에 의하면 발주부서의 장은 자체사업의 경우 추정 금액이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1억원), 용역 5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옥천군 계약심사부서에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를 득하고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민원문서 보완요구 절차 부적정

[현 황]

민원명	신청인	접수일	보완내용	1차 보완 (요구일/ 처리일)	2차 보완 (요구일/ 처리일)	최종 처리일
건축물 용도변경	***	2018.7.4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2018.7.5. /2018.7.18	2018.07.25. /8.25	2018.8.29. (취하)

【위법부당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한다”와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충북 옥천군 ***면 ***이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을 처리하면서 신청서류 검토결과 나타난 보완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을 1차보완 요청하였으나 민원인이 보완하지 않아 2차 보완요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하여야 하나, 1차보완 처리일(2018.7.18.)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2차 보완을 요구하는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완 절차,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민원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